

#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05,089,395	30,152,682
일반회계	808,092,410	24,242,772
특별회계	196,996,985	5,909,910
공기업특별회계	174,219,960	5,226,599
상수도사업	71,573,591	2,147,208
하수도사업	102,646,369	3,079,391
기타특별회계	22,777,025	683,311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3,224,256	96,728
교통사업 특별회계	12,637,825	379,135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885,003	26,55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80,432	23,41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753,830	82,615
쓰레기발생유발부담금 특별회계	46,200	1,386
대지보상 특별회계	1,008,875	30,266
기반시설 특별회계	201,775	6,053
수질개선 특별회계	1,238,829	37,16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357,38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242,77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